



2024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 공개용 -

2024년 6월



2024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24. 5. 24.(금) 15:00~17:00

◆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컨퍼런스룸

◆ 참 석 : 10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강성국
- 내부위원(1): 윤정훈(기록정책과장) ※ 유숙현 위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배 석 자(2): 김은아(간사), 김지혜(열람담당)

◆ 안건 및 회의 결과

일련번호	심의(보고)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4-1 (보고)	'24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현황	▶ 보고 사안으로 이견 없음	가결
2024-2 (심의)	'24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 서울기록원 검토결과에 이견 없음	가결
2024-3 (심의)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 심의회 운영 규정」 제2호 5호 삭제 → 이견 없음 ▶ 운영 규정 '시행일자' 부칙조항 마련(추가)	수정가결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상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기록원 2024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부위원인 권영규 위원님과 유숙현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의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므로' 5명의 위원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 오늘은 안건이 세 개이며,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고 회의 종료 시 의결서 확인 및 서명을 통해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첫 번째 안건 및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 <안건 1: '24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간사>

- 안건1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보고안건으로 사전검토 의견 없음

<위원장>

- 첫 번째 안건은 보고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는 두 번째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2: '24년 제1차 기록물 공개재분류 검토 결과> 심의

<간사>

- 안건2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 서울기록원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 네. 잘 들었습니다.
- 사전 검토의견에서 서울기록원 의견과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질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없습니까?

<○○○ 위원>

-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안건자료 11쪽에 한국점자도서관과 관련된 기록물이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유숙현 위원님께서 도서관이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보니 그 공간은 현재 공터로,

공원으로 활용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 위원>

- 현재 그 건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도 소송관련해서 제3자도 평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 시설이 아니라면 공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십니까?
- 의결은 안건별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로 할까요?

<○○○ 위원>

- 안건별로 쟁점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사는 세 번째 안건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3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간사>

- 안건3 설명 ※ [붙임1] 안건자료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위원님은 서울기록원 의견과 동일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 위원님은 법에 의한 사항이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공개심의회 통합 방안 또는 두 위원회가 따로 존속해야

한다면 두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 위원님은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서울기록원 관련 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 위원님께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내지 조문을 확인해야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에 정보공개심의회도 따로 있습니까?

<간사>

- 정보공개심의회는 서울시 본청 정보공개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도 서울시의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기록원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별도로 없다면 제가 의견을 드린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통합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위원>

- 그럼 심의 업무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간사>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저희의 업무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30년이 지난 오래된 기록들이 많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기록은 대부분 현안 업무와 관련된 기록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개에 대한 대응이나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럼 추후에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공개심의회 민간위원 비율에 대한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시 개정하면 되겠네요.

<○○○ 위원>

- 저희 기관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입법안을 만들었는데, 공공기록물법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사항을 상급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이 안건에 대해 서울기록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습니까?

<○○○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운영 규정을 보니 안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규정의 ‘시행일자’에 대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자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안건을 발의해서 의결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십시오.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위원>

- 시행일자는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 조문은 실무자분들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 부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로 서울기록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번째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세 개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가결’, 세 번째 안건은 시행일자 부칙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원>

- 네.

<위원장>

-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 후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폐회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심의회는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